

서울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나2026339(본소), 2020나2026346(반소) 판결
[구상금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나2026339, 2020나202634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가합108993, 2020가합104959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원창연, 김상우, 김세화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가합108993(본소), 2020가합10495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1. 3. 10.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 주식회사 B(반소원고, 이하 피고 또는 피고 (주)B라고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C, D(이하 각각 'C, 'D'이라고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또는 원고 A(주)이라고 한다)에게 842,604,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7,395,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본소 청구 일부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반소 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피고 C, D"을 각각 "제1심 공동피고 C, D"으로 고쳐 쓰고, 1) "피고 B"를 "피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2) 포함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 및 지불각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H(주)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10억 원 중 원고가 양수한 전환사채를 통해 I(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돈을 C, D와 연대하여 2019. 3.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H(주)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I(주)로부터 회수한 157,395,690원을 뺀 나머지 약정금 842,604,310원(= 10억 원 - 157,395,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이 사건 약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 (주)B3) 는 원고 A(주)에게 나머지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 상장회사인 피고 (주)B와 그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나) 피고 (주)B와 그 대표이사인 D 사이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 상법 제398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다) 피고 (주)B의 대표이사인 D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대표권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라)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합병이 완료됨을 전제로 체결되었으며, 그와 같은 약정의 동기는 원고 A(주)에게 표시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합병계약은 2018. 11. 14. 합의해제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주)B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하며, 이에 따라 약정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2)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은 피고 (주)B가 H(주)이 원고 A(주)에 부담하는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거래이므로 상법 제542조의9 제1항4)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H(주)이 당시 상장회사였던 피고 (주)B의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제1호), 이사(제2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H(주)이 피고 (주)B의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이거나, 피고 (주)B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H(주)은 피고 (주)B의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 거래가 '이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고, 위 거래가 피고 (주)B의 대표이사인 D의 계산으로 D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와 지불각서를 통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상법 제549조의9 제1항 제2호에 의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약정에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 (주)B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적용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98조).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 이러한 이사의 거래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유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에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약정에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 (주)B 주장과 같이 D이 H(주)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자신이 이사로 있는 피고 (주)B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어야 한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 16, 25, 39, 43호증, 을 제3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D이 H(주)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피고 (주)B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H(주)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주)B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원고 A(주) 측에서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던 이 법원 증인 M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H(주)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H(주)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C을 만난 적이 없고 D만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M을 비롯한 원고 A(주) 측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H(주) 측 D의 의사결정 권한, 지위, 자격 등을 의심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M은 '원고 A(주)이 D 등을 고소한 후 원고 A(주)의 채권 회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도 D이 모든 업무 및 의사결정을 담당하였으며, C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약정 당시에도 D이 H(주)의 의사결정을 도맡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원고 A(주)이 D, C을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갑 제43호증)에는 "피고소인(D)이 운영하는 고소외 H(주)"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M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5호증)에서도 "D이 사실상 운영하는 H(주)"이라는 표현이 발견된다. 검찰에서도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불기소이유서(갑 제39호증)에서 '이 회사(H(주)을 의미한다)의 업무가 D과 C 간에 분담되어 있어서 D은 시스템 사업부(이 사건 사업을 의미한다)를 맡아서 책임지고, C은 인테리어 사업부를 맡아서 책임지는 것으로 하였다'는 D의 진술을 근거로, C의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 원고 A(주)이 H(주)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송한 공문 중 H(주) 대표이사를 C이 아닌

D으로 기재한 공문이 발견되고(갑 제16호증), 이 사건 약정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 제3자인 (주)N의 대표이사 O이 작성한 고소장에서도 D을 H(주)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하였으며(갑 제9호증의 1), 원 ·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D의 H(주) 이메일 계정(P)에 메일을 보내면서 D을 "대표이사님"으로 지칭하는 등(을 제38호증의 1 내지 5), D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H(주) 측 의사결정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여럿 발견된다.

(라) 이 사건 지불각서(갑 제4호증) 기재 C과 D의 필체가 차이가 나는 것은 C 역시 위 지불각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서명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이전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C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할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사회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또는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한 부분) 등 참조].

(2) 이사회 승인 여부

갑 제3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주)B 이사회에서 2018. 4. 10.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A(주)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양도를 결의한 사실, 5) 2018. 6. 1.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D이 미리 이사회에서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였거나(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등 참조),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사회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2018. 4. 10.자 피고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재적 이사 11인 중 6인이 찬성하여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로 승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원고 A(주)의 악의, 중과실 인정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 A(주)이 이 사건 약정 당시 그에 대한 피고 (주)B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 A(주)이 피고 (주)B 이사회 승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 이 사건 합의각서와 지불각서에는 피고 (주)B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상대방인 원고 A(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원고 A(주)은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D을 통하여서만 H(주) 측과 접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에는 H(주)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C

역시 위 각서 작성에 관여하였으므로, 원고 A(주)의 입장에서 H(주) 측이 이 사건 약정에 필요한 회사 내부 절차를 모두 마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다) D이 H(주)의 실질적 대표이사 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대리인이어서 이 사건 약정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 (주)B 역시 이 사건 약정을 승인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도 일반적인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쳤을 뿐, 상법 제398조에서 요구하는 이해관계 개시·재적이사 2/3 찬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주)이 이 사건 약정에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거래 상대방인 원고 A(주)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상법 제398조의 입법취지상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경우에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주)B는 H(주)의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모회사였으므로 피고 (주)B가 H(주)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더라도 그러한 거래를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주)B와 H(주) 사이에 피고 를 존속회사로 하는 소규모합병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한편, H(주) 채권자들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소규모합병 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원고 A(주)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진 2018. 4. 초경 피고 (주)B에 대한 상장폐지사유가 공시되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H(주)과 피고 (주)B의 합병이 불가능해질 것이 확실해졌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 A(주)이 이 사건 약정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6)

다) 소결론

결국 원고 A(주)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주)B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상법 제398조에 의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주)B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대표권 남용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3) 나) (3)항에서 본 사정, 즉 H(주)과 D 간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 피고 (주)B는의 완전모회사로서 H(주)과의 소규모합병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원고 A(주)으로서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주)B와 H(주) 간 합병이 불가능해질 것이 확실해지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이 D의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 A(주)이 그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 (주)B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동기의 착오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합병계약이 완료되어야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B는, 원고 A(주)과 사이에 작성한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서에 이 사건 합병계약이 해제될 경우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 원고 A(주)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 결국 위 계약서에 위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 (주)B가 주장하는 동기, 즉 이 사건 합병계약의 완료가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약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피고 (주)B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 (주)B가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다양하게 하는 주장은 이를 증명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주)B는 C, D와 연대하여 원고 A(주)에게 나머지 약정금 842,604,301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3.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9. 4.

30.까지는 위 원고 청구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주)은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규정 시행일인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약정은 앞서 2. 나. 1)항에서 한 주장과 같이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상법 제398조에 위반되거나, 대표권남용에 해당하거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받아야 할 전환사채 권면액 중 일부인 157,395,650원을 I(주)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한 판단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I(주)로부터 받은 157,395,65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권순형 판사 이승한

1)제1심 공동피고 C, D도 항소하였다가 2021. 1. 26. 항소를 취하하였다.

2)주식회사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주)를 부가한다.

3)제2의 나.항에서는 판단의 정확을 위해 원고 대신 원고 A(주)로, 피고 대신 피고 (주)B로 표현한다.

4)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5)제1심 증인 L은 2018. 4. 10.자 이사회 의사록(을 제17호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6)피고 (주)B 주장 근거 중, 원고 A(주)도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B도 주식회사이므로, 개인 대 주식회사의 법률관계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약정 외에도 이 사건 합병계약을 포함하여 다양한 법률관계가 성립되었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 전반에 대한 원고 A(주)의 검토 여부, 인식 등도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을 개인 대 주식회사의 법률관계와 유사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